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764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가소2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65-*****,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2) 원고는 2014. 1. 3.경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건물을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통장으로 3회에 걸쳐 11,073,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에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불법행위에 사용된 이 사건 통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성명 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명의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점, ②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대출금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대출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은 점, ③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장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2013. 2. 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넘긴 뒤로 2014. 1. 3.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통장

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와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및 불법의 정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송금액인 11,073,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5,536,500원 (11,073,000원 × 0.5)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